

의안번호	2220896
의 퇴 인	윤건영의원
회 답 일	2026.9.9.
추계번호	26C4348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 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3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(제3호 신설) 4.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(제4호 신설)	재량규정
2	안 부칙 제2조 신설(심리지원에 관한 적용례)	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축에 살처분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도 적용한다.(제2조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부칙 제2조 신설(심리지원에 관한 적용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시행 시 관련 인건비,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동법¹⁾에 따라 이미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, 2026년에 2,626백만원이 편성

□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가축의 살처분을 한 사람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, 심리 치료 방법, 교육자료, 필요 전문인력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렵고, 현행법 조항²⁾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) 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